

# 「서울도시연구」 연구윤리규정

2009년 6월 1일 제정  
2011년 5월 27일 개정  
2018년 5월 24일 개정  
2023년 12월 27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서울도시연구」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서울도시연구」에 제출된 논문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이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저자이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조 (구성 등)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 및 위원장)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고 서울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인 이상 위촉한다. 단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위원) 조사나 검증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장 편집위원 윤리지침

제7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논문 취급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서울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9조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제10조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성) 논문심사 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제4장 심사위원 윤리지침

제11조 (논문심사의 성실성과 적실성) 심사위원은 서울도시연구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논문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3조 (논문심사의 타당성)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논문심사의 비밀 보장과 사전 인용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제5장 연구자 윤리지침

제1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형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수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부정행위 금지
11.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16조 (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제17조 (자기표절)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또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제18조 (이중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타 학술지를 통해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조 및 변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연구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와 변조는 일종의 사기행위로서 연구자는 절대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21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22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 본지 편집위원회는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전에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IRB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간 대상 연구를 투고할 경우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윤리서약) 연구자는 저자 윤리지침에 따라 논문 투고 시 본지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6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제24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서울도시연구 편집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25조 (예비조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예비조사결과보고) ① 예비조사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27조 (본조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60% 이상,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되어야 한다.
- ④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8조 (본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서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출석 및 서면요구 불응 시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 (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전의 조사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윤리위원회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진술기회의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 제보에서 주장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1조 (본조사결과의 보고)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로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위원들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로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대의견의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32조 (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확정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판정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을 경우에는 판정결과를 편집위원회,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을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원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구원장에게 통보한다.

제34조 (징계) ① 징계의 정도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② 연구부정행위 징계조치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논문 삭제	투고 금지 1년/3년/5년	사과문 게재	소속기관· 한국연구재단 통보
위조	○	○	○	○
변조	○	○	○	○
표절	○	○	○	○
부당한 저자표시		○	○	○
자료의 중복사용, 중복게재		○	○	○
논문 대필	○	○	○	○

- ③ 연구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 사무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6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판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